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박주민·강훈식·김한규

정성호 • 이용우 • 박정현

김 윤 · 정준호 · 안태준
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, 특히 2024년은 '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'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.

매년 온열·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,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.5배나 증가했음. 특히, 이러한 온열질환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,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.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.

한편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, 「전기사업법」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이 없음.

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·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3 신설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3(전기요금의 감면)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있다.
 -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 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
 - 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 - 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 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 -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6.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경로당
 -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- 8.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[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와의 관계가 "자"(子) 3인 또는 "손"(孫)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

말한다] 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

- 9. 폭염 또는 한파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
- 10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
-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.
- ③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, 감면의 기간, 감면의 내용 및 그 밖에 전기요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3(전기요금의 감면) ①
	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
	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
	<u> 감면할 수 있다.</u>
	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
	<u>따른 중증장애인</u>
	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	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
	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
	의 상이자
	3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
	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
	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부터
	제3급까지의 5・18민주화운동
	<u> </u>
	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
	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
	은 유족 1인
	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
	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
	<u>계층</u>
	6.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의3제

1항에 따른 경로당

-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- 8.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[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"(子) 3인 또는 "손"(孫)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] 또는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
- 9. 폭염 또는 한파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
- 10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전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 하는 사람 또는 시설
-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.
- ③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 하는 경우 국가는 전기판매사업 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

<u>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<u>지원할 수 있다.</u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, 감면의 기간, 감면의 내용 및 그 밖에 전기요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